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5

제출년월일 : 1996. 1.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유래된 초등 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헌법 및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 기본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국제적 관행 및 현행의 교육체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법중개정법률이 '95.12.29. 법률 제5069호로 공포되어 '96.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중 해당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현행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53개의 조례중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외 11개 조례의 조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변경함 (안 제1조 내지 제12조)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등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제3호・제4호・제13호 및 제15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2조(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학원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학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별표1, 별표1의2, 별표1의3, 별표1의4 및 별표1의 5의 명칭란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2항·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사립국민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사립국민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및 별표1의 구분란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안 제1조: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1. 하급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국민학교 · 중학교 소속의 6등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임용 (중징계 및 교육청(타 시.도 포함)간 제보제외)	1. -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 -
2. (생략)	2. (현행과같음)
3. 교육청 · 국민학교 · 중학교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임용(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및 징계제외)	3. - - - - 초등학교 -
4. 교육청 · 국민학교 · 중학교 소속 6(등)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4. - - - - 초등학교 -
5.~ 12. (생략)	5.~ 12. (현행과같음)
13. 유치원(유아원 포함), 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13. - - - - - - - - - - - 초등학교, -
14. (생략)	14. (현행과같음)
15. 관할 각급학교의 학칙변경(국민학교 이상 각급학교의 위치 · 명칭 · 목적은 제외한다)인가	15. - - - - - - - - - - - - - (초등학교 -
16. ~ 24. (생략)	16. ~ 24. (현행과같음)

[안 제2조 : 한밭교육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치)박물관은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 1동 113-1번지(대전삼성국민학교 구내)에 둔다.	제2조(위치) - 초등학교 - - - - - - -

[안 제3조 :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장학생의 요건) (생략) 1. 국민학교 전 교육과정의 성적이 극히 우수한 자	제2조(장학생의 요건) (현행과 같음) 1. 초등학교 - - - - - - - - - - - - - - - - -

[안 제4조 : 대전광역시학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강사의 교습범위) (생략) 1. 유치원 및 국민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국민학생 이하를 대상으로하는 교습과정 2. (생략)	제12조(강사의 교습범위) (현행과같음) 1. - - - - - 초등학교 - - - - - - - - - 초등학생 - -- - - - - - - - - - - - - 2. (현행과같음)

[안 제5조 : 대전광역시교육감소관공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 1. (생략) 2. 각급학교 :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와 대전광역시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병설유치원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같음) 1. (현행과같음) 2. - 초등학교 - .

[안 제6조 :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설치) 대전광역시에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조(설치) 대전광역시에 교육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각종학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별표1〉

명 칭
대전삼성국민학교
대전신흥국민학교
대전동광국민학교
대전자양국민학교
대전성남국민학교
대전천동국민학교
대전가양국민학교
대전판암국민학교
대전대동국민학교
대전현암국민학교
대전홍룡국민학교
대전용전국민학교
동대전국민학교
대전용운국민학교
산내국민학교
산흥국민학교
동명국민학교
동명국민학교효평분교장

〈별표1의 2〉

명 칭
대전대흥국민학교
대전중앙국민학교
서대전국민학교
대전선화국민학교
대전문창국민학교
대전목동국민학교
대전대신국민학교
대전석교국민학교
대전보운국민학교
대전태평국민학교
대전산성국민학교
대전대문국민학교
대전신평국민학교
대전옥계국민학교
대전문성국민학교
대전동문국민학교
대전오류국민학교
산서국민학교

〈별표1〉

명 칭
대전삼성초등학교
대전신흥초등학교
대전동광초등학교
대전자양초등학교
대전성남초등학교
대전천동초등학교
대전가양초등학교
대전판암초등학교
대전대동초등학교
대전현암초등학교
대전홍룡초등학교
대전용전초등학교
동대전초등학교
대전용운초등학교
산내초등학교
산흥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효평분교장

〈별표1의 2〉

명 칭
대전대흥초등학교
대전중앙초등학교
서대전초등학교
대전선화초등학교
대전문창초등학교
대전목동초등학교
대전대신초등학교
대전석교초등학교
대전보운초등학교
대전태평초등학교
대전산성초등학교
대전대문초등학교
대전신평초등학교
대전옥계초등학교
대전문성초등학교
대전동문초등학교
대전오류초등학교
산서초등학교

현 행		개 정 안	
세천국민학교	대전문화국민학교	세천초등학교	대전문화초등학교
대전대룡국민학교	대전원평국민학교	대전대룡초등학교	대전원평초등학교
대전대암국민학교	대전중촌국민학교	대전대암초등학교	대전중촌초등학교
	대전보성국민학교		대전보성초등학교

〈별표1의 3〉

명 칭
대전유천국민학교
가수원국민학교
대전백운국민학교
대전갈마국민학교
대전삼천국민학교
대전내동국민학교
대전변동국민학교
대전봉산국민학교
대전가장국민학교
대전도마국민학교
대전복수국민학교
기성국민학교
기성국민학교원정
분교장
길헌국민학교
대전탄방국민학교
대전서부국민학교
대전문정국민학교

〈별표1의 4〉

명 칭
진잠국민학교
유성국민학교
금성국민학교
문지국민학교
학하국민학교
흥도국민학교
덕송국민학교
봉암국민학교
대덕국민학교
구즉국민학교
대동국민학교
외삼국민학교
남선국민학교
대전어은국민학교
대전전민국민학교
대전송강국민학교

〈별표1의 3〉

명 칭
대전유천초등학교
가수원초등학교
대전백운초등학교
대전갈마초등학교
대전삼천초등학교
대전내동초등학교
대전변동초등학교
대전봉산초등학교
대전가장초등학교
대전도마초등학교
대전복수초등학교
기성초등학교
기성초등학교원정
분교장
길헌초등학교
대전탄방초등학교
대전서부초등학교
대전문정초등학교

〈별표1의 4〉

명 칭
진잠초등학교
유성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문지초등학교
학하초등학교
흥도초등학교
덕송초등학교
봉암초등학교
대덕초등학교
구즉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외삼초등학교
남선초등학교
대전어은초등학교
대전전민초등학교
대전송강초등학교

현 행		개 정 안	
대전정림국민학교	(별표1의 5)	대전정림초등학교	(별표1의 5)
한밭국민학교	명 칭	한밭초등학교	명 칭
대전갑천국민학교	회덕국민학교	대전갑천초등학교	회덕초등학교
대전성룡국민학교	와동국민학교	대전성룡초등학교	와동초등학교
대전성천국민학교	대전동산국민학교	대전성천초등학교	대전동산초등학교
대전서원국민학교	대전화정국민학교	대전서원초등학교	대전화정초등학교
대전둔산국민학교	대전대화국민학교	대전둔산초등학교	대전대화초등학교
대전만년국민학교	대전중리국민학교	대전만년초등학교	대전중리초등학교
대전둔원국민학교	신탄진국민학교	대전둔원초등학교	신탄진초등학교
	신탄진용정국민학교		신탄진용정초등학교
	장동국민학교		장동초등학교
	새일국민학교		새일초등학교
	대전동도국민학교		대전동도초등학교
	대전중원국민학교		대전중원초등학교
	대전법동국민학교		대전법동초등학교
	대전양지국민학교		대전양지초등학교

[안 제7조 : 대전광역시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 구성) ①(생략) ②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교육청 교육장 소속 초등교육과장, 관리과장 및 유아교육계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공립국민학교 병설유치원장 1인 2.~4.(생략)	제3조(협의회 구성) ①(현행과같음) ② - 1. 공립초등학교 - - - - - - - - 2.~4.(현행과같음)

[안 제8조 : 대전광역시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 : 대전광역시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설치조례	제명 : - - - - - - - 초등학교 - -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학전 유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립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초등학교 -.
제2조(설치) ①유치원은 교육감이 학교시설, 학생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립국민학교에 설치한다. ②유치원의 명칭은 ㅇㅇ국민학교 병설유치원이라 칭한다.	제2조(설치) ① - 초등학교 - - - - - -. ② - - - - - - - - - ㅇㅇ초등학교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조직) ①생략 ②원장, 원감은 당해 국민학교의 교장, 교감이 겸직한다. ③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학급을 담당하며 별도 정원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국민학교의 교사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입학) ①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4세로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 ② (생략) 제7조(수당지급) ①유치원 학급을 담당하는 국민학교 교사에게는 겸직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조직) ①(현행과같음) ② - - - - - - - - 초등학교 - - - - - - - - - - - - . ③ - 초등학교 - - - - - - - - - - - -. 제4조(입학) ① - 초등학교 - ② (현행과같음) 제7조(수당지급) ① - - - - - - - - - - - 초등학교 - . ② (현행과같음)

[안 제9조 : 대전광역시사립국민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명:대전광역시사립국민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사립국민학교 및 유치원의 입학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별표 1 〉	제명: - - - - - - 초등학교 - - - - - - - - - - - - - - - - 제1조(목적) - - - - - - - - - - 사립초등학교 - . 〈 별표 1 〉

구 분	징 수 한 도 액
사립국민학교	500원
유 치 원	500원

구 분	징 수 한 도 액
사립초등학교	500원
유 치 원	500원

[안 제10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수료의 면제대상) (생략) 1. (생략) 2. 국민학교 재학생이 청구하는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	제5조(수수료의 면제대상) (현행과같음) 1. (현행과같음) 2. 초등학교 -

[안 제11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3.(생략) 4. 제2관서: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교육청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같음) 1.~ 3.(현행과같음) 4.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 -. - - - - - -) 5. (현행과같음)

[안 제12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3.(생략) 4. 제2청소: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국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교육청 직할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생략)	제2조(정의) (현행과같음) 1.~ 3.(현행과같음) 4.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 -. - - - - - -) 5. (현행과같음)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行政權限의委任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996年 1月 31日

文 敎 社 會 委 員 會

大田廣域市敎育監所管行政權限의委任에관한條例等中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1996. 1. 31.
文敎社會 委員會

Ⅰ. 審 査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6年 1月 19日 大田廣域市 敎育監

나. 回 附 日 字 : 1996年 1月 22日

다. 上 程 日 宇 : 第49回 大田廣域市議會 (臨時會)
第 4次 文敎社會 委員會 ('96. 1. 31)
上程, 審査, 議決

Ⅱ.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 : 行政管理擔當官)

1. 提 案 理 由

ㅇ. 일제식민지 시대에서 유래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헌법 및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기본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국제적 관행 및 현행의 교육체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의 교육법 중 개정법률이

ㅇ. 법률 제5069호로 공포되어 '96.3.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중 해당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主 要 骨 子

ㅇ. 현행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53개의 조례중 대전광역시 교육감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외 11개 조례의 조항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변경함.
(안 제1조 내지 제12조)

Ⅲ.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金鎭鎬)

ㅇ. 본 조례안은 앞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난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69호로 개정 공포되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육법중 개정법률에 의거 일제시대부터 사용해오던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헌법 및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기본교육으로서의 이념과 일치시키고 현행의 교육체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로 변경함에 따라 현행 대전광역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총 53개의 조례중 12개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국민학생"은 "초등학생"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음.

ㅇ. 본 조례안으로 개정되는 조례의 제명을 살펴보면

- 대전광역시 교육감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 한밭교육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학원조례
- 대전광역시 교육감소관 공인조례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 대전광역시 유아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조례
- 대전광역시 공립국민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 대진광역시 사립국민학교 유치원입학 선발수수료 징수조례
- 대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등

12개 조례가 되겠으며 동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Ⅳ. 討 論 要 旨 : 省　略

Ⅴ. 質疑 및 答辯要旨 : 省　略

Ⅵ. 審 査 結 果 : 原案可決

Ⅶ. 基他 必要한 事項 : 없　음